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20.10.19.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입증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규제"란 공사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체 규정·시행세칙·지침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2. "규제업무담당부서"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규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업무주관부서장" 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해당 사규 운영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3조(기능) 규제입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령의 제정 및 변경과 정부 지시 등에 따른 규제 개선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규제입증요청과 관련된 사항
 - 3.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공사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학계, 법조계, 유관기관 종사자 및 각계 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을 외부위원으로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은 공사 부서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담당부서의 부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원회 의안의 준비·작성·배부 및 심의결과 정리 등
 - 2. 업무주관부서장 소관업무에 대한 규제입증 심의 의뢰 접수 및 결과 통보
 -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정리
 -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제8조(외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외부위원 또는 외부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조사·자료·수집·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② 당해 사안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제9조(외부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유 없이 장기간 부재로 활동을 하지 않을 때
 -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나 긴급을 요하는 등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4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업무주관부서장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규제입증요청에 따른 건의자·이해관계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자문·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관련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에게 업무상 필요한 조사·자문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이 조사·자문·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수당) 외부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밀유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고 회의에서 알게된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10.19일 부터 시행한다.

서 면 결 의 서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안번호 | 의 안 명 | 결 의 | |
|------|-------|-----|-------|
| | | 동 의 | 부 동 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의사표시는 해당란(결의)에 ㅇ 표기함

| 20 | 년 | 월 | 일 |
|----|---|---|-----|
| 위 | 워 | | ଡ଼ୀ |

위 임 장

본인은 규제입증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의 대리인이 제 차 규제입증위원회(20 . .)에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대 리 인

소 속:

직 위:

성 명: ①

20 년 월 일

위 임 자

직 위 :

성 명 : ①

한국가스기술공사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 귀하

직무윤리 확인서

| □ 소속 : □ 성명 : 상기 본인은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에서의 공정 및 정치적 중립성 준수 2.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용・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 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1. 일일 업무와 관련 부당한 면의・향용・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 선 행위 금지 1.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1. 임원 일 (서명) | |
|---|---|
|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 선 행위 금지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성명 : 상기 본인은 규제입증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
|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 3.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 |
|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6.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ㆍ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8.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
| 선 행위 금지 9.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년 월 일 | 7.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
| 위 금지 년 월 일 | |
| | |
| | |